

해양·수산관련 법령 제·개정 주요내용(2013년 하반기)

1. 선박구획기준 개정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02호, 2013. 08. 27

- SOLAS 협약 II-1장/8-1규칙의 개정사항 (MSC.1/Circ.1400)을 수용함
- '14. 1. 1 이후 건조되는 길이 120m 이상 또는 3개 이상의 주수직구역을 갖는 여객선(약 6천 톤급 여객선)은 침수 사고 시를 대비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제13조)
 - 어느 하나의 수밀구획이 침수되었을 때 별표 2에서 정한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별표 2) 추진장치, 조타장치 및 조타제어장치, 항해시스템, 연료유의 충전·이송 및 공급장치, 선교·기관 구역·안전통제실·소화 및 손상통제팀 사이에 그리고 여객 및 승무원의 통지 및 소집을 위하여 요구되는 내부 통신, 외부통신, 소화주관 장치, 고정식 소화장치, 화재 및 연기탐지장치, 발지 및 평형수 시스템, 동력작동 수밀문 및 반수밀문, 안전구역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시스템, 침수감지장치, 해양수산부장관이 손상제어 노력에 중요한 것으로 결정한 기타 시스템
 - 침수 사고 시 항구로 안전하게 회항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운항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원성 컴퓨터 또는 육상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복원성 컴퓨터 및 육상 지원 시스템의 요건은 별표 4에서 정함(별표 4) 복원성 컴퓨터 및

육상 지원 시스템의 요건

- 복원성 컴퓨터 요건 : 복원성 정보, 복원성 컴퓨터, 비상전원, 계산값 및 선원의 자격에 대한 요건
- 육상 지원 시스템 요건 : 허용오차, 육상 계산 프로그램 상시 연결, 운영가능 시간, 대응 인력 및 선박과 육상지원 공급자간의 연락 장비 등의 요건
- 제공되는 정보의 요건 : GM, GZ, 복원정 범위, 복원정 곡선하의 면적, 격벽갑판하 구획들의 자유표면 모멘트, 탱크의 침수 수위 감지기 위치, 선박의 각 위치에서의 흘수, 횡경사 및 트림, 필수장비 운용·탈출·구명 설비 전개에 미치는 횡경사 트림의 영향, 풍압 측면적 및 면적 중심 계산 자료, 종강도 및 전단강도, 침수시 연료소모량 예측자료, 그 외 IMO에서 정하는 사항

2.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20호, 2013. 09. 04

- 국제협약(MARPOL) 및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에 새롭게 도입되는 에너지효율검사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제항해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에 적용하는

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방법을 정함
(제3조)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의 최소출력 평가기준을 정함(제4조)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검증 방법 및 계산을 위한 전력조사표의 검증방법을 정함(제5조)

3.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45호, 2013. 09. 05

-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구명설비코드(LSA Code)를 국내 기준에 수용('10. 5. 3) 시 누락된 개인용보호장구의 색도확인, 환경 및 성능 요건의 신설
 - LSA Code의 구명설비 일반요건(1.2) 일부를 추가 수용(Res. MSC 207(81))
- 자유강하식 구명정의 작동시험 시 선원의 잦은 인명사고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SOLAS 협약 개정사항 수용 필요
 - 구명정 작동요원만 탑승한 작동시험 또는 모의진수 작동시험 방법을 인정
 - IMO 제90차 해사안전위원회('12. 5) 채택 (발효 : '14. 1.1), SOLAS III-20 11.2.3
- 구명동의, 방수복, 노출보호복, 보온구 등의 색도확인, 환경 및 성능 요건 일부 추가(제35조~제38조)
 - 개인용보호장구의 색도 요건(국제오렌지색, 선명한 주황색, 탐지에 도움을 주는 잘 보이는 색깔일 것)
 - 영하 30~65°C에서 견딜 수 있을 것
 - 영하 1~30°C의 해수온도에서 작동될 수 있을 것
 - 영하 15~40°C의 대기온도에서 작동될 수 있을 것

- 자유강하식 구명정의 작동시험 시 전체 인원과 의장품을 만제한 상태에서 작동시험을 실시했으나, 구명정 작동요원만 탑승한 작동시험 또는 모의진수 작동시험 방법을 인정하도록 개정됨(별표 15)

4.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해양경찰청고시 제2013-4호, 2013. 09. 11

-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선박패스 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요건
 - 선박패스 장치의 등록, 고장·분실 시 행정 사항
 - 선박패스 장치의 작동을 중단 가능 시기
 - 항·포구에 입항한 경우 및 수리 등을 위한 장기간 운항 중단의 경우
 - 선박패스 시스템 및 정보의 이용
 - 해상에서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수습, 해상테러 및 해적·무장강도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국가안보 등 위기관리, 해상에서의 수난구호, 해상교통안전관리, 어선의 안전운항관리, 선박의 출항·입항 관리, 기상 등 안전정보 제공

5.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개정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27호, 2013. 09. 24

- 강화플라스틱(FRP) 선박의 재질의 특성상 화재

확산 등 화재에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일반선박의 방열구조 설치(기관구역 내부에 난연성 수지액 적층)대상을 현행 10톤 이상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함(제67조)

- 대상선박 : (종전)총톤수 100톤 이상의 여객선
→ (개정)모든 FRP 선박

6.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28호, 2013. 09. 24

-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구명설비코드(LSA Code) 개정사항 반영 및 레저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레저선박의 선체에 대한 시험 기준을 신설함
- 전폐형구명정, 구조정(고체식), 복합식 구조정 및 복합식 고속구조정의 요건에 포함된 이탈장치 요건 개정(별표 1 제10호, 제82호, 제117호)
 - 이탈장치 관련 시험요건(외관검사, 성능시험, 재료시험 등) 중 '163. 구명정 이탈장치' 요건을 준용하거나, 해당 요건에 따른 형식 승인 제품인 경우 시험 생략 가능
- 폴로 진수되는 구명정의 구명정 이탈장치에 대한 시험요건 신설(별표 1 제163호)
 - 외관검사 및 치수측정, 재료시험, 성능시험(이탈시험, 강도시험, 내구성시험, 진수시험 등)
-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선체(비사업용 pleasure보트에 한정)의 시험기준 신설(별표 1 제164호)
 - 건조업체가 형식승인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험기준 마련
 - 시험요건 신설 : 도면승인, 작업장 등의 요건

확인, 사용재료 확인, 재료시험, 적층시험, 구조확인, 강도시험, 외관확인 등

7. 어선법 시행령 개정

▣ 대통령령 제24777호, 2013. 09. 26

-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명령권한 등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1754호, 공포 '13. 4. 5, 시행 '13. 10. 6)됨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던 어선 건조·개조의 중지 명령권한을 삭제함(제18조)

8. 우수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 물건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31호, 2013. 10. 02

- 레저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우수제조사업장 확인대상 범위를 '소형선박의 선체'에서 '소형선박 및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비사업용 pleasure보트의 선체'로 확대함(제4조)
- 우수제조사업장이 갖추어야 하는 제조설비 요건 중 '현도 작업설비'와 '리벳 이음 설비'를 대신하여 현재의 발전된 기술 수준이 적용된 대체 설비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별표 2 제1호)
- 우수제조사업장의 시험 및 자체검사설비에 대해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별표 2 제2호)
 - 비파괴검사설비 의무보유 요건을 완화하여 외부(두께측정업체)에 의뢰가 가능하도록 함

9. 선박법 시행규칙 개정

▣ 해양수산부령 제49호, 2013. 10. 24

- 재화중량톤수증서·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선박국적증서 및 국제톤수증서 등의 영역서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낚시승객,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의 나잠어업(裸潛漁業)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제46조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

- 총톤수 10톤 미만 어장관리선에 설치하는 보조기관에 대하여 예비검사 및 정기적 검사이 효력시험 외의 검사를 면제함(별표 16)

10.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 해양수산부령 제51호, 2013. 10. 30

-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면제 대상을 내수면에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확대하고 및 설치기간을 유예함(제42조의2)
- 경과조치

구분(총톤수)	종 전	개 정
신조어선	'12. 07. 15부터	현존어선과 동일
5톤이상	'12. 12. 31까지	'13. 12. 31까지
2톤이상 5톤미만	'13. 07. 15까지	'14. 12. 31까지
1톤이상 2톤미만	'14. 07. 15까지	'15. 12. 31까지
1톤 미만	'15. 07. 15까지	'16. 12. 31까지

-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중 어선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확히 규정함(제64조)
- 어선원의 가족, 어선소유자(어선관리인 및 어선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어선회사의 소속 직원과 어선수리 작업원, 시험·조사·지도·단속·점검·교습 등에 관한 업무에 사용되는 어선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도선사 등으로서 어선원의 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사람,

11. 관공선 승무정원 기준 개정

▣ 해양수산부훈령 제129호, 2013. 12. 03

- 관공선 승무정원 기준에 어업지도선 및 시험조사선이 추가됨(제2조, 제3조, 제4조, 별표)
- “어업지도선”이라 함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어업협정사항 수행, 어업지도·단속 및 어업인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함(제2조 제7호)
- “시험조사선”이라 함은 어업발전을 위하여 해양환경조사, 원양어장개발조사, 어업자원조사, 어업기술개발조사 및 어장환경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함(제2조제8호)

12.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55호, 2013. 12. 06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낚시전문교육을 위한 수탁기관의 지정(제2조)
- 낚시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3조~제13조)
 - 교육시간, 교육교재, 교육강사,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관리규정 및 교육운영규정, 교육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교육계획의 통지, 교육신청, 교육이수증, 운영기관과 관리기관의 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지도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13.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57호, 2013. 12. 10

-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국제화재안전장치 코드(International Code for Fire Safety System)의 개정안을 국내 기준인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반영함
- '14. 1. 1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
 - 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 요건
 - 저팽창포말소화장치의 포말원액은 형식 승인된 제품이어야 하며, 다른 형식의 포말원액과 혼합되지 않을 것(제16조)
 - 연료유가 퍼질 수 있는 가장 넓은 단일구역 전반에 고정식 방출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포말 블랭킷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포말 용량을 5분 이내에 방출할 수 있을 것(제16조)
 - 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의 제어장치는 신속히 접근할 수 있고,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보호된 장소가 화재에 의하여 차단될 우려가 없는 가능한 좁은 장소에 일괄 배치할 것(제16조)
 -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요건(제17조)
 - 수동방출이 가능하고, 방출 후 1분 이내에

- 요구하는 포말을 생성할 수 있을 것
- 자동방출은 국부소화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될 것
- 기관구역, 화물덱프실 및 차량구역에는 포말의 방출을 알리는 가시경정보 설치할 것
- 자동스프링클러장치 요건(제19조)
 - 물이 주요 설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제어장소에는 SOLAS에서 허용하는 건관식 시스템 또는 준비작동식 시스템(Pre-action system)을 설치할 수 있음
- '14. 7. 1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
 - 송수관 요건(제7조)
 - 소화주관과 포말주관이 갑판포말소화장치와 일체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들 주관에는 각 모니터의 바로 앞쪽에 손상된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 밸브를 부착할 것
 -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탄산가스소화장치 요건(제13조)
 - 컨테이너 또는 일반 화물구역의 배관장치는 2/3이상의 가스를 10분 이내에 방출할 수 있을 것
 - 교체산적 화물구역의 배관장치는 2/3이상의 가스를 20분 이내에 방출할 수 있을 것
 - 제어장치는 화물의 적재상태에 따라서 1/3, 2/3 또는 전량을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
 -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 요건(제20조)
 -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 방수(放水)능력, 추가 포말원액 비치요건, 물분사 요건
 - 석유제품 및 화학품을 운반하는 선박의 포말용액 공급율 요건
 - 선박에 공급되는 포말원액 제품 및 형식 요건
 - 호흡구 요건(제33조)
 - 공기통의 상호 교환 요건 및 공기통 내의

- 공기용량 감소를 경고하는 장치 부착할 것
- 화재탐지장치 요건(제35조)
 - 비상 시 자동전환스위치 기능 상실 대비 요건 및 비상전원 관련 요건
- 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의 소방설비 요건(제47조)
 - 차량 구역 또는 로로구역의 소방설비가 국제 화재안전장치(FSS) 코드 규정에 적합할 것
- 소방원장구가 있는 소화반에 무전기 비치 요건(제56조, '14. 7. 1 전에 건조된 선박은 '18. 7. 1 이후 정기적 검사시 적용)
 - 2대 이상의 방폭형 또는 본질안전형 쌍방향 휴대식 무전기 비치할 것
-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요건(제57조)
 - 화재제어실이 있는 경우 화재제어실에 화재 표시반을 추가설치할 것
- 고정식갑판포말소화장치의 비치요건(제67조)
 - 포말방사기를 위한 모니터 및 호스 연결구의 선박 내 위치 요건

1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

▣ 대통령령 제25013호, 2013. 12. 17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하여 수상안전교육의 면제대상에 추가(제8조)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및 육·해·공군 본부, 수상레저활동과 관련있는 경기단체,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등
- 술에 취한상태의 기준 조정(제17조)

-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취운전 기준 조정 (0.08% → 0.05%)
- 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완화 : 검사원 수 완화 (5명→3명)(제26조)
- 대통령령으로 면허시험을 면제하는 기관·단체의 인적기준 조정(별표 3)
 - 면허시험 면제기관의 자체교육 강사(5년 이상 경력)를 포함시킴

1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해양수산부령 제58호, 2013. 12. 19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기준 중 고의로 사람을 사상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1차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으로 타법령과 형평성 결여되기 때문에, 고의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와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를 분리하여 처벌 하도록 개정함(별표 13)
-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행정처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별표 13)

※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kst.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고객의 현장에로기술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검사제도 등에 관련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갯벌타워 13층
선박안전기술공단 정부대행검사실
☎ 032-260-2288~9 / Fax. 032-260-2235
e-mail : it@kst.or.kr